

【 4 】 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출년월일 2004.

제출자 양주시장

1. 제안이유

-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며 기존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를 둑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보조금 지원 대상(안 제4조)

-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2) 시가 권장하는 사업
- 3) 기타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수립 및 공고방법을 정함(안 제6조)

마. 사회단체의 보조금지원신청서 제출 및 접수방법을 정함(안 제7조)

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방법을 정함(안 제8조)

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안 제10조)

- 1) 총 15명.
- 2) 당연직 위원 : 부시장(위원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 3)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원 등 민간전문가 10명

- 아. 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운영방법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 자. 운영세칙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안 제16조)
- 차. 보조금 정산 보고 및 사업평가에 대하여 정함(안 제17조)
- 카.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지출 정리도록 함(안 제18조)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시보,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소관 부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의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위원이 퇴위 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민간협력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위촉직위원에 대한 심의안건 관련여부는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양주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정

□ 제정이유

-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보조금 지원 대상(안 제4조)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시가 권장하는 사업

3) 기타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수립 및 공고방법을 정함(안 제6조)

마. 사회단체의 보조금지원신청서 제출 및 접수방법을 정함(안 제7조)

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방법을 정함(안 제8조)

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안 제10조)

1) 총 15명.

2) 당연직 위원 : 부시장(위원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3)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원 등 민간전문가 10명

아. 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운영방법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자. 운영세칙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안 제16조)

차. 보조금 정산 보고 및 사업평가에 대하여 정함(안 제17조)

카.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지출 정리토록 함(안 제18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공공기관의 범위등)
-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관련 사업계획서 : 없음 예산수반사항

- 자치단체별 상한기준액 : 578,345천원(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함)

 사전 예고결과

- 2004. 1. 12 ~ 1. 31 입법예고
- 시의회 의견 반영(시의회 간담회시)

당초	변경
심의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제10조2항)	15인 이내로 구성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제10조2항)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제10조5항)	간사는 민간협력담당으로 한다
-	부칙 조항 삽입
지방의회의원(제10조3항)	시의회의원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2004)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행정자치부)

관계법령 발췌자료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5.11.30>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1.30>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정 2003. 10. 19 조례 제3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불일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불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결정통보서를 보조금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결정통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의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 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이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사용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된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때
2. 사업을 폐지한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는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200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1. 사회단체보조금(p22)

□ 현 황

○ 정액보조금(13개 단체)

(단위 : 천원/연간)

단체별	시·도	시·군	자치구	일반구	읍면동	지원근거
①한국예총	35,000	21,000	-	-		문화예술진흥법
②대한노인회	18,000	10,000	10,000	10,000		노인복지법
③한국소비자연맹	5,000	-	-	-		소비자보호법
④체육회	850,000 (제주510,000)	시·자치구	인구30만이상 : 12,100 인구30만미만 15만이상 8,000 인구15만미만 : 4,800			국민체육진흥법
		군 : 2,400				
⑤상이군경회	10,000	10,000	10,000	10,000		
⑥전몰군경유족회	8,000	10,000	10,000	10,000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⑦전몰군경미망인회	8,000	10,000	10,000	10,000		
⑧대한무공수훈자회	8,000	10,000	10,000	10,000		
⑨지방문화원	22,000	20,000	20,000	-		지방문화원진흥법
⑩광복회	10,000	-	-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⑪새마을단체	50,000	36,000	36,000	-	지역1,200 부녀1,200	새마을-바로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⑫바르게단체	31,000	16,000	16,000	-	1,700	
⑬한국자유총연맹	36,000	12,000	12,000	-	600	자총육성에관한법률

○ 임의보조금

-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지원대상 및 지원액 자율결정

(단위 : 천원/연간)

시 · 도			시 · 군 · 구		
서울	부산·경기	기타시·도	시·군	자치구	일반구
1,200,000	1,000,000	800,000	시 : 283,000 군 : 173,000	283,000	161,000

□ 문 제 점

- 13개 단체 만 정액기준을 운영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제기
-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로 추가지정 요구

□ 개선내용

- 정액보조단체별(13개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 + 정액보조단체를 뮤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상한제(ceiling제) 도입
-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자치단체별 15인 이내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 근거 : 가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 ○ 운용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 : 한도범위내에서 예산편성 ⇒ 사회단체신청 ⇒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분 ▶ 심사기준 : 자치단체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취지 등을 감안하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신청절차 및 신청서식, 심사위원회 운영요령 등은 자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
|---|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

- 개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기준액

- 예산년도의 직전년도 당초예산규모, 면적, 인구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되, 자치단체 유형별 특성을 고려 ①시·도, ②시·자치구, ③일반구가 있는 시 ④군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산식개발

○ 상한기준액 산정산식

(단위 : 천원/ 명/ km²)

유형별	산식
시·도	$S = d + 7b/100,000 + 6a + 3p/100$
시·자치구	$S = d + 47b/100,000 + 40a + 18p/100$
일반구가 있는 시	$S = d + 12b/100,000 + 40a + 1p/10$
군	$S = d + 35b/100,000 + 15a + 36p/100$

< 범례 >

▲ S : 단체별 상한기준액	▲ b : '03 당초일반회계예산규모(천원)
▲ a : 자치단체면적(km ²)	▲ p : 2003. 6월 말 주민등록상 인구수(명)
▲ d : 기초기준액(천원)	
· 광역시·도(1,800,000천원)	· 시·자치구(470,000천원)
· 일반구가 있는 시(530,000천원)	· 군 (340,000천원)

2.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p84)

< 개 선 방 향 >

- 정액보조단체별(13개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되, 기존 임의보조단체+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상한제(ceiling제) 도입
-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자치단체별 상한액 설정

- 예산년도의 직전년도 당초예산규모, 면적, 인구수를 반영하여 산정
- 자치단체 유형별 특성을 고려 ①시·도, ②시·자치구, ③일반구가 있는시 ④군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산식적용
- 산정공식

(단위 : 천원/ 명/ ㎢)

유형별	산식
시·도	$S = d + 7b/100,000 + 6a + 3p/100$
시·자치구	$S = d + 47b/100,000 + 40a + 18p/100$
일반구가 있는 시	$S = d + 12b/100,000 + 40a + 1p/10$
군	$S = d + 35b/100,000 + 15a + 36p/100$

< 범례 >

- ▲ S.: 단체별 상한기준액
- ▲ b : '03 당초일반회계예산규모(천원)
- ▲ a : 자치단체면적(㎢)
- ▲ p : 2003.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명)
- ▲ d : 기초기준액(천원)

광역시·도(1,800,000천원)	시·자치구(470,000천원)
일반구가 있는 시(530,000천원)	군 (340,000천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자치단체별 15인 이내로 구성
 -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 근거 : 가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
- 운용요령
 - ▶ 절차 : 한도범위내 예산편성 ⇒ 사회단체신청 ⇒ 심사 ⇒ 배분
 - ▶ 심사기준 : 자치단체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 심의

※ 세부신청절차 및 신청서식, 심사위원회 운영요령 등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社會團體補助金支援條例 標準案

본 표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는 相異할 수 있음

行政自治部

目 次

-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지원대상)
- 제5조 (지원범위)
-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 제7조 (신청 및 접수)
- 제8조 (심의)
- 제9조 (결과통보)
- 제10조 (위원회 구성)
- 제11조 (위원회 기능)
- 제12조 (회의 운영)
- 제13조 (분과위원회)
- 제14조 (의견청취 등)
- 제15조 (회의록)
- 제16조 (실비보상)
- 제17조 (운영세칙)
- 제18조 (보고 등)
- 제19조 (별도계정)
- 제20조 (준용)

< 부 칙 >

- ① 시행일
- ② 경과규정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시(도, 시, 군, 자치구/ 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시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시·군·자치구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로 하고, 부위원장은 ○○실(국)장(시·군·자치구는 국(실·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국장(과장), ○○국장(과장), ○○국장(과장)
○○국장(과장), ○○국장(과장), ○○국장(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 단체에 대하여 전문직 쇠연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 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시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제6조 이하 보조금의 신청·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4 회계연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부터 적용한다.